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4-990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31호(2011.08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69호(2012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호(2013.01.17.)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2013-65호(2013.06.20.)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27호(2014.09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04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###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#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#### 2. 공람 · 공고 내용

- 가. 사업명칭 :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62-1번지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153,501㎡
- 라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1층, 31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2,8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29,254㎡, 녹지 5,500㎡, 공원 5,021㎡ 공공청사 2,399㎡, 공공공지 2,251.00㎡

3. 공람기간 : 2014.12.04. ~ 2014.12.18.

4. 시 행 자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2-1호 보령빌딩 2층
- 성 명 :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2241-2833)

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909-3161)

7. 관계도서 :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